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58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경 과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75호)	오기형의원	2024.8.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25)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36호)	황운하의원	2024.10.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10.16.)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50호)	임광현의원	2024.10.11.	"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4.10.28.)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2024.10.31.)에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의 제목 중 "자동 부의"를 "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가"를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를 "기한을 경과하여심사 중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본문"을 각각 "제2항"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u>자동 부의</u> 등) ① (생 략)	<u>부의</u>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가</u> 예산안등과 제4항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	위원회가
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	
여 제1항에 따른 <u>기한까지 심</u>	
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기한을 경과하여
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	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u>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u> .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u><단서 삭제></u>
<u> 니하다.</u>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③ <u>제2항</u>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	
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u>제2</u>	<u>제2항</u>
<u>항 본문</u> 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	
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	
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④·⑤(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